

장애인 건강검진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1. 지정신청 내용(해당 항목에 "○" 표기)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폐암	

2. 검진 보조 인력 명단(비상근 인력은 제외)

성명	소속	연락처	해당 기관 고용일	자격증	해당 업무

※ 수어 통역 업무를 외부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업무위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검진 인력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검진기관 지정신청서 상의 검진 인력으로 같음합니다.

3. 시설 기준

시설기준		O/X
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대수 기준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유도표지 설치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나. 매개공간 접근성	1) 주출입구 접근로 단차 기준(2센티미터 이하)	
	2) 건물 주출입구와 통로의 진입 용이성	
	3) 건강검진 안내 표지 설치로 주출입구 표시	
다. 주출입구	주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라. 안내표지 등	1) 주출입구 부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판 등 설치	
	2) 이동경로에 안내판 연속 설치	
	3) 안내판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마. 승강기	1)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기준(2층 이상인 경우 1대 이상)	
	2)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바. 경사로	경사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사. 계단	계단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아. 접수대	1) 이용 편의성	
	2) 접수대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자. 내부 건강검진 경로	1) 출입구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2) 통로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차. 장애인용 화장실 등	1) 장애인용 화장실 접근성	
	2) 장애인용 화장실 등 내에 성인 기저귀 교환용 침대 비치	
	3)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에 관한 세부 기준	
카. 경보·피난설비	1) 청각경보시스템(비상벨), 시각경보시스템(경광등) 연속 설치	
	2) 화장실 내부 및 탈의실에 시각경보기(경광등) 설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시설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항목에 O/X로 표기합니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인증서를 제출합니다.

4.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 조 번호	제 조 국명	제 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 검진 장비 보유 현황 예시

일련 번호	장 비 명	수량	모델명	제 조 번호	제 조 국명	제 조 연도	구입 연도	비 고
1	휠체어 체중계	1	WCS-200	제시 불가	Korea	2014	2014	
2	장애인 촬영용 X-ray	1	CXD-RD85D2	RD85 D130 ****	Korea	2013	2013	디텍터 높이 지상 55cm 가능